

유전자재조합(GMO)식품 등 식품안전관리의 강화



梁奎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WTO체제의 출범으로 수입식품이 증가하고 유전자가 재조합된 콩, 옥수수 등 농산물의 재배면적 확대와 이를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의 생산·유통이 증가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식품안전관련 주변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욕구증대로 '절대적 안전식품'을 요구하는 등 식품안전 관리 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및 잔류 농약·항생물질 등 위해성 물질의 잔류허용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식품공전』, 『식품첨가물 공전』 등의 개정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식품 등의 기준·규격을 개정하여 국제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국내 등록 농약중 기준 미설정 농산물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을 설정하고 라이신 등 합성첨가물 5종과 에리스톨 등 천연첨가물 5종에 대한 신규지정도 필요하다.

가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안전한 식품의 생산기반을 조성하며, 특히 최근 다발하고 있는 대형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단체급식에 HACCP를 적용 확대시킴과 더불어, 현재 6개

식품류에 적용되고 있는 HACCP의 적용 품목류도 연차적으로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3대 국민 기초생활사범 중의 하나인 부정 불량식품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상설감시체계로 『식품전담조사반』을 설치·운영할 예정으로, 이 조직의 활동으로 향후 고의적 위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식품안전분야의 현안문제중 최신 제품인 유전자재조합(GMO)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최근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여부에 관한 확답은 누구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유전자조작여부를 검사할 공인된 방법도 없는 실정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알권리, 선택권리 나아가 건강유지를 위해 유전자재조합식품여부에 관한 표시제를 실시함은 사전·사후관리상 많은 애로점이 있다.

하지만 부족한대로 여러 측면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수입·유통시에는 유전자재조합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 등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자료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제를 200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안전성 평가와 별개로 GMO식품 수입·판매·유통시 구분유통관리가 가능하도록 유전

자재조합식품 표시, 원산지, 구분유통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구비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검사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공인검사기관을 확대·지정하여 유전자재조합 함유 여부에 대한 과학적 검증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GMO 전담관리 조직 및 인력확보를 추진중에 있다. 더불어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과 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소비자, 관련 영업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유전자재조합식품 외에 안전성 강화를 위해 관련 법 및 제도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건강식품이

주요 식품안전시책이
내실화, 효율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식품안전관리업무에 대한 관련 전문가 및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견제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 건강식품은 최근 국민소득향상과 예방차원의 건강유지 증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즉, 유사건강식품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우수한 건강식품을 장려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의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주요 식품안전시책이 내실화, 효율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식품안전관리업무에 대한 관련 전문가 및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견제시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